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4. 14 선고 2015재가단2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준재심피고) A

피고(준재심원고) B

준재심대상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2810 에 관한 2014. 9. 22.

자 화해권고결정

변론 종결 2016. 3. 31.

판결 선고 2016. 4. 14.

재심대상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2810 사건에 관한 2014. 9. 22. 자 화해권고결정

주 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군산시 C 대 2,0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 지상 시멘트 블록조 철제강판 기와지붕주택 건물 55㎡,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건물 49㎡ 및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7㎡ 지상 쇠파이프 골조 비닐하우스 57㎡를 각 철거하고, 위 (가), (나), (다)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라.

준재심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준재심 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군산시 C 대 2,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281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상에 설치된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 및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이 사건 건축물을 통하여 피고가 점유하던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2810 사건에 관하여, 2014. 9. 22.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2014. 9. 24.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D, E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4. 9. 26. 송달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0. 11.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몰아내기 위하여 강박에 의하여 불법으로 녹취를 하고 미리작성한 합의서에 우울증 장애와 인지장애인인 피고의 도장을 뺏다시피 하여 찍은 다음,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엄연한 소송사기임으로 준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주장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준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성안



